【 6 】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1. 10.

제 출 자 양 주 군 수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2000.7.22)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12.30)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용조문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개정함(안 제2조 · 제7조 · 제9조)

○ 법 제16조제1항 → 법 제12조

○ 법 제26조제1항 → 법 제26조제3항

○ 법 제63조제2항제2호 → 법 제63조제3항제2호

○ 법 제63조제2항제3호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 →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별표4의 제5호 가목에서"를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별표4 제3호 라목에서"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호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법 제63조제2항제2호"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법 제63조제2항제3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략)	1.(현행과 같음)
2.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 별표4의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2. ---------- ---------- ----------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별표4 제3호 라목에서----------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 압축에 의한 탈수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발생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제5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방법)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 운영하는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로 재이용하는 농 · 축산농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 ·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 ---------- ---------- ---------- ----------법 제26조 제3항---------- ---------- ---------- ---------- ---------- ----------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쇄 ·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 소멸화하여야 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②----------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법 제63조제3항제2호------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 수집 ·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토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법 제12조 ---------- ---------- ---------- ---------- ----------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 ·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 ---------- ---------- ---------- ----------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 · 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3항---------- ---------- ----------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중 사료화 ·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 퇴비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 · 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③---------- ---------- 법 제26조제3항---------- ---------- ---------- ---------- ---------- ---------- ---------- ----------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